
간호학과 규정집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Soar High! Reach Higher!

차 례

1. 간호학과 운영규정	1
<별첨>	6
2. 간호학과 교내실습 운영규정	9
<별첨>	11
3.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규정	17
4. 간호학과 교내실습 안전관리지침	21
5.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지침	25
6.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27
7. 실습지도위원회 운영지침	29
8. 학과발전위원회 운영지침	31
9. 학생지도 및 취업위원회 운영지침	32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운영규정

(구: 간호학과 운영내규)

제정일 : 2014. 3. 1.

개정일 : 2015. 12. 1.

개정일 : 2019. 3. 1.

개정일 : 2020. 7. 1.

개정일 : 2023. 2. 21.

개정일 : 2025. 2. 2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간호학과와 학사운영과 행정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학칙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 본 규정에 준하여 학과운영에 적용하며, 필요시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학과장) ① 본 학과에는 간호학과 교수 중 학과장 1인을 두며 인사규정은 본교 규정에 따른다.

② 학과장은 다음 각 호의 학과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발전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입학, 졸업, 교과과정, 수업, 학술 연구 등 전반적인 학과 관련 사항
3. 학생들의 보건, 후생, 상벌 등 학생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4. 학과와 관련된 행정활동 업무 사항
5. 학과 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사항
6. 학과 전공 시간강사 위촉 및 심사 관련 사항
7. 학과 조교 복무, 업무조정 및 관리
8. 학과 교원 근무상황 및 수업진행 현황 관리
9. 학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10. 학생별 담임지도교수, 학년별 지도교수, 전공동아리 지도교수 선정 및 관리
11. 기타 학과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지도교수) ① 학과에는 학생들의 원활한 지도를 위해 학생별 담임지도교수, 학년별 지도교수, 전공동아리 지도교수를 둔다.

② 관련 지도교수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③학생별 담임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1. 수강신청지도
2. 학생진로 및 취업지도
3. 학생생활상담
4. 학업성취 및 졸업인증관련 사항 지도
5.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④본교 학과 전공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하며, 전공동아리 지도교수는 해당 동아리 관련 활동에 대한 지도를 시행한다.

제6조(교수회의) ①본 학과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②교수회의는 본 학과 소속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학과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교수회의는 정기적으로 학기 당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학과장이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소속 교수의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④교수회의는 본 학과 소속 전임교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교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간호학과 규정류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입학, 수료, 학위 수여 및 졸업
3. 학생지도, 장학 및 후생, 학생 포상 및 징계
4. 학과 발전 방안 및 특성화 방안(계획)
5. 교과과정
6. 학과 교수의 초빙 관련 사항
7. 졸업인증 관련 사항
8. 각 위원회 주요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①학과운영을 위해 학과발전위원회,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위원회, 실습지도위원회, 학생지도 및 취업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실습지도위원회, 학생지도 및 취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과 전임교원 중 학과장이 1인을 위촉한다.

④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과발전위원회
 - 가. 학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나. 학과 발전기금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다. 기타 학과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위원회
 - 가. 학습성과 교육과정 제정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관리
 - 다.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체계 운영
 - 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 수준, 평가체계 개발 및 운영
 - 마. 지속적인 학과운영개선
3. 실습지도위원회
 - 가. 실습교육과정 제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임상실습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다. 실습실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라. 핵심간호술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학생지도 및 취업위원회

- 가.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
- 나. 비교과과정 및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 지도
- 다. 재학생 취업 및 졸업생 취업 유지를 위한 지도
- 라.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 학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수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 ⑦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과 자체 예산을 충당한다.
- ⑧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 ⑨각 위원회 활동 및 세부 규정은 위원회별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조교) ①교육조교는 교무학사 및 수업학사 등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수업관련 기자재 관리, 학생관리, 임상실습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②실습조교는 교내실습 지도보조, 교내실습실 관리, 실습실기자재 관리, 임상실습 관련 행정업무 보조, 자율실습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교원인사) ①교원 초빙 관련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결·상정하며 본교 규정에 따른다.

- ②전임교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임상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의 교원인사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제3장 교육 및 학생지도

제10조(교원 수업시수) ①간호학과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2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 교원의 시수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 ②이론 수업은 1학점당 1시간을 1시수로 인정, 교내실습수업은 1학점당 2시간을 2시수로 인정, 임상실습수업은 1학점당 3시간을 3시수로 인정한다.

제11조(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개편) ①학과는 교육목표 및 프로그램학습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②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위원회는 매학기 개강 2개월 전 강의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교원에게 배부하고 운영방안을 협의한다.
- ③교육과정개편은 매 4년 주기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
- ④교육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하며 매 학기 개설교과목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하고, 본교 교과과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⑤감염병 등 관련 요인으로 인해 대면수면 진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본교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이론, 교내실습, 임상실습)을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해당교과목은 이론, 교내실습, 임상실습을 모두 포함한다.
 2. 비대면 수업은 동영상 강의제공, 실시간 화상수업이어야 하며, 과제만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
 3. 성적평가방법은 본교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 ⑥교육과정 편성 시 전공기초과목 중 인문사회과학영역은 8학점 이상

제12조(졸업이수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한 후 본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졸업에 필요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세부 이수학점은 입학년도에 따라 적용한다.

제13조(편입생 교육과정 이수) ①편입한 학생은 당해학년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학과장이 교양과목, 전공과목 인정학점을 사정한 후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당해학년의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하도록 한다.

②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학과 졸업인증) ①본 학과의 졸업인증은 본교 「학칙」에 의거하며, 각 입학년도에 따른 간호학과 졸업기준을 준수한 경우 졸업인증 확인 대상이 된다.

②학과의 졸업인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교과과정(교양필수, 교양선택,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의 학점이수
2. 전 학년 성적 누계 평점이 1.50 이상
3. 경건훈련(채플) 총 6학기 이상 이수 총 6학기 이상 이수
4. 본교 사회봉사인증제(봉사 30시간 이상) 통과
5. 영어인증제(TOEIC 700점 이상) 통과
6. 졸업종합시험합격(2023년 학번이후 졸업고사(이론, 실기) 합격으로 적용)
7. 졸업논문 작성 및 발표

③졸업인증 관련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며, 본교 졸업사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확인한다.

제15조(학생지도) ①학생지도의 원칙은 본교의 규정을 따른다.

②학과장은 학과의 학생회 활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도한다.

③전공동아리 지도교수는 동아리 활동을 육성하고 지도한다.

④학과장은 매 학기마다 소속 교수별 지도학생 명단을 배정한다.

⑤학생별 담임지도교수는 학기 단위로 1회 이상 개인 학생상담을 시행하고, 그 내용을 학생역량관리시스템 상의 상담관리시스템에 입력(기록)한다.

⑥상담관리시스템 상에 입력되지 않는 학생(연한초과자)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상담 내용을 별도의 상담 일지에 기록하고 학과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제출한다.

⑦학과의 담임지도교수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은 본교 규정에 따라 학생지원처에서 집행한다.

제16조(장학생) ①본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장학금은 본교 「장학규정」에 의하며, 공문 요청 시 장학생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추천하고, 본교 학생지도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교내외 장학금지급은 본교의 「장학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예산

제17조(예산 수립 및 집행) ①학과장은 본교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사업계획 내용을 평가 한 후에 차기년도 예산을 수립하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수립한 예산은 본교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확정된 예산은 학과의 자율에 따라 집행한다.

③예산은 80% 이상 집행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조정을 신청한다.

④집행된 예산은 portal system을 통해 학과 교수에게 공개한다.

제18조(실험실습비) ①실험실습비는 재학생들을 위해 교내 외 실습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②본교 예산 세목 기준에 따라 실험실습비를 재학생 1인당 250,000원 이상 책정한다.

③실험실습비는 일차 기안을 작성하여 학과장 또는 학부장, 교무처장 또는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한다.

④실험실습비는 책정된 예산의 80% 이상을 집행한다.

⑤기타 예산 관련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9조(동문회) 학과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동문회를 구성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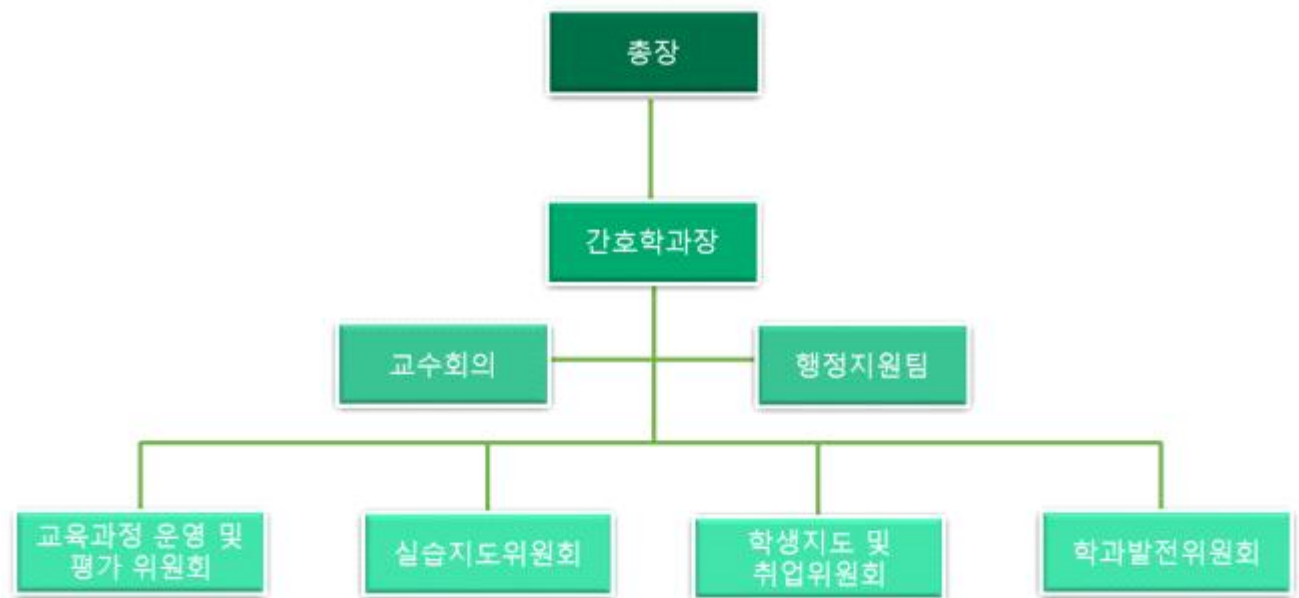
제20조(개정 및 보완) 이 규정의 개정 및 보완에 대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본교의 규정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내용은 간호학과에서 운영한 내규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별표1> 간호학과 조직기구표



< 별표2 > 업무분장표

구분		주요업무
교수회의		▪ 학과장이 회의 주관 ▪ 학사 제반 행정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 각 위원회 총괄
위원회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위원회	▪ 학습성과 교육과정 제정 및 편성에 관한 사항 심의 ▪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관리 ▪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체계 운영 ▪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 수준, 평가체계 개발 및 운영 ▪ 지속적인 학과운영개선
	실습지도위원회	▪ 실습교육과정 제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임상실습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실습실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 핵심간호술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학생지도 및 취업 위원회	▪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 ▪ 비교과과정 및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 지도 ▪ 재학생 취업 및 졸업생 취업 유지를 위한 지도 ▪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학과발전위원회	▪ 학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학과 발전기금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 기타 학과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조교	교육조교	▪ 교무학사 : 교무행정, 학적, 입학, 휴학, 복학, 재학생 관리, 교무학사 관련 내용 총괄 ▪ 수업학사 : 수업지원, 시간강사 관리, 출결사항 관리, 후보강 관리, 출강관리, 평가관리 등 수업학사 전반적인 내용 총괄 ▪ 학생관리 : 장학금 신청, 취업현황취합, 취업정보 전달, 지도 교수 온라인 배정, 지도일지 관리 등 전반적인 학생 관리 ▪ 수업관련 기자재 관리 : 수업관련 강의실 기자재 현황 점검 및 관리 ▪ 임상실습행정 : 임상실습관련 전반적인 행정업무 총괄 ▪ 학과 기안 작성 및 지출결의서 작성업무 총괄
	실습조교	▪ 교내 실습지도 보조 : 기본간호학실습, 건강사정실습, 통합시뮬레이션실습, 핵심기본간호세미나 등 교내실습 관련 교과목 실습지도 보조 ▪ 교내 실습실 관리 : 기본간호학실습실, 시뮬레이션실습실 전반적인 청결 및 안전을 포함한 관리 ▪ 실습기자재 관리 : 교내실습 관련 기자재 점검 및 수리, 소모품 신청 등 관리업무 총괄 ▪ 임상실습관련 업무 행정보조 : 임상실습지 연락 등 행정업무 보조 ▪ 자율실습 지원업무 : 자율실습 전반적인 지도 및 관리업무 총괄

<별표3> 졸업이수학점

입학년도	교양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총이수 학점
	필수	선택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2025학년도	16	14	8	10	70	14	132
2024학년도	16	14	8	10	70	14	132
2023학년도	16	14	8	10	70	14	132
2022학년도	16	18	8	12	72	14	140
2021학년도	16	18	8	12	72	14	140
2020학년도	20	14	8	12	74	12	140
2019학년도	20	12	8	12	74	14	140

간호학과 교내실습 운영규정

제정일 : 2017. 3. 1.

개정일 : 2019. 3. 1.

개정일 : 2020. 7. 1.

개정일 : 2023. 3. 14.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간호학과 재학생의 교내실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도·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간호학과 교내실습 전공교과목에 적용한다.

제3조(실습 교과목의 운영)

1. 교내실습 교과목은 학생용과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를 구성, 활용하여 본교 간호학과와의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내실습은 실습지도교원 대비 학생 20명 이내로 운영한다.
3. 감염병(COVID-19 등)으로 인해 교내실습이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수하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4.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당 학기에 실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학기에 보강할 수 있으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실습학점 및 이수시간) 교내실습교과목 학점에 따른 실습시간은 1학점 당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교내실습 지도)

1. 교내실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과에서는 교내실습지도교원과 실습조교를 배치한다.
2. 교내실습지도교원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임상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3. 간호사면허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실습조교인 경우에는 교내실습 지도에 참여할 수 있다.
4. 기본간호학실습은 전임교원이 학기 당 최소 1학점 이상을 지도해야 한다.
5. 교내실습지도교원은 실습실의 실습실 이용규칙, 안전관리, 실습 기자재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며, 학과의 「교내실습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한다.
6. 교내실습전공교과목 담당 전임교원은 교내 실습실에서 시행되는 수업과 자율실습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제6조(자율실습 운영)

1. 학과는 학생들의 핵심간호술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율실습을 운영해야 한다.
2. 자율실습 운영은 학생 수에 비례하여 최소 주당 4시간 이상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습학생은 자율실습 시간을 활용하여 핵심간호술 등의 숙련도를 높이고 실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실습학생은 학과 자율실습 신청 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며, 자율실습 종료 후에는 자율실습일지를 작성한다.
5. 자율실습은 실습조교가 담당하며 실습실기자재 및 물품관리, 학생자율실습 신청, 출석, 일지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제7조 (출결 및 평가)

1. 출결은 본교 「학사운영규정」의 제34조, 제35조, 제36조에 준하여 평가한다.
2. 평가는 본교 「학칙」에 준하며, 교내실습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실습학생의 의무 및 제재)

1. 실습학생은 교내실습 지도교원 및 실습조교의 지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실습학생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교내실습에 임해야 한다.
3. 실습학생은 교내실습실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실습학생은 실습실 이용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5. 교내실습 지도교원 및 실습조교의 지도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교내실습을 중지시키며, 교수회의 의결을 통해 교내실습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조(교내실습 안전관리)

1. 교내실습담당교과목 지도교원은 매년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실습실안전교육을 시행한다.
2. 실습학생은 매 학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학과는 본교 행정처와 연계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4. 학과의 「교내실습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실습학생의 인권보호)

1.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은 교내실습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 교내실습과정 및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 및 차별을 금지한다.
3. 학생의 안전과 인권에 위험성이 높은 술기에 대해서는 학생을 통한 실습교육을 지양하고 간호술기모형으로 대체하여 실습한다.
4. 인권침해관련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담당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은 일차 면담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5. 학과장은 필요한 경우, 교수회의에 상정하여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6. 교내실습교과목 담당교원은 교내실습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제3조제3항, 제4항은 2020년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실습실 이용 수칙]

1. 실습실 이용 시에는 10분전까지 입실 완료한다.

2. 간호전문직에 적합한 복장 및 용모를 갖춘다.

- 1) 복장 : 실습 시 활동이 편한 상, 하의를 착용하되 치마, 반바지, 레깅스, 속옷이 보이는 옷차림을 금지한다.
- 2) 실습복 : 청결하고 구김이 없는 실습복을 착용하며 랩가운의 경우 단추를 채우도록 한다.
- 3) 신발 : 간호화 착용하며, 신발 뒤축을 꺾어 신지 않는다.
- 4) 양말 : 흰색 양말을 착용하며, 스티킹 또는 튜는 색상의 양말 착용을 금지한다.
- 5) 머리 : 머리는 청결하게 하며 갓에 닿지 않게 유지한다. 긴머리의 경우 단정하게 묶으며 잔머리는 핀을 사용하여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한다.
- 6) 손톱 : 손톱은 청결하게 유지하며 진한 색상의 매니큐어 사용을 피한다.
- 7) 장신구 : 요란한 장신구의 착용은 금지한다(큰 귀걸이 및 알반지, 요란한 목걸이 등).

3. 실습실 내에서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한다.

4. 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 사용 시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 1) 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 사용 시 지도교수 또는 실습조교 지도하에 사용한다.
- 2) 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 사용 시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 3) 실습 기자재 및 소모품은 필요한 만큼 사용하되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4) 전력을 사용하는 실습 기자재의 경우 물 묻은 손으로 전선 접촉을 금지하며 사용 후 전원을 끈다.
- 5) 실습 기자재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보고한다.
- 6) 린넨류 오염 시 즉시 보고한다.

5. 실습 소모품 사용 후 의료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일반 쓰레기별로 분리수거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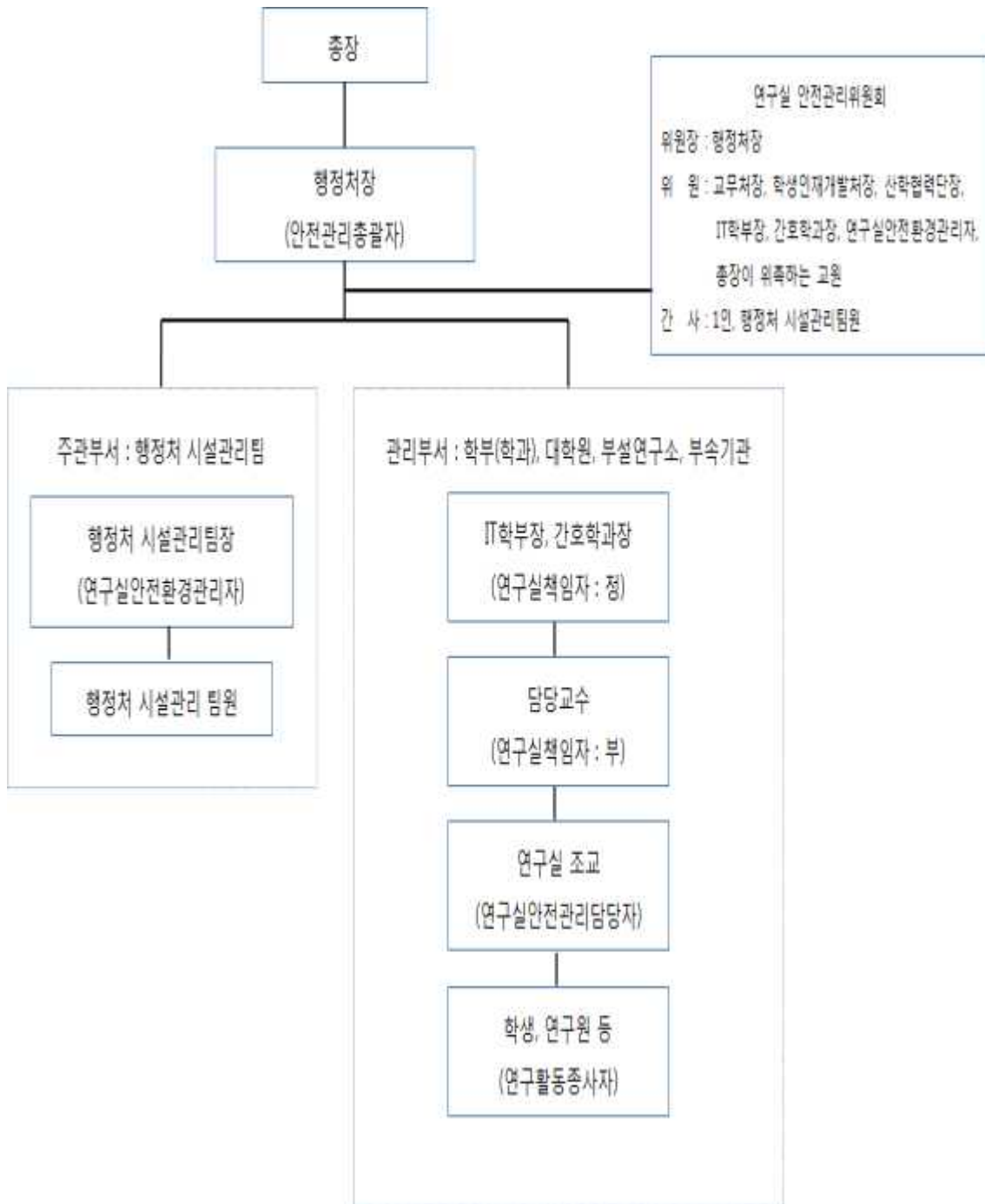
6. 화재, 지진 등 비상 상황 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를 숙지한다.

7. 자율실습 시에는 관련 세부 수칙을 준수한다.

- 1) 자율실습은 사전에 예약한다.
 - ① 자율실습은 주 단위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자율실습일 변경, 취소는 실습일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실습 당일에는 불가하다.
- 2) 자율 실습시간을 준수하며, 충실히 실습에 임한다.
- 3) 자율실습이 끝난 후에는 정리, 정돈을 하며 정리상태를 실습 조교에게 확인받는다.
- 4) 실습실 사용 일지 작성하며, 일지 미작성시 실습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위 사항 위반 시에는 1회 자율실습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2> 본교 연구실(실습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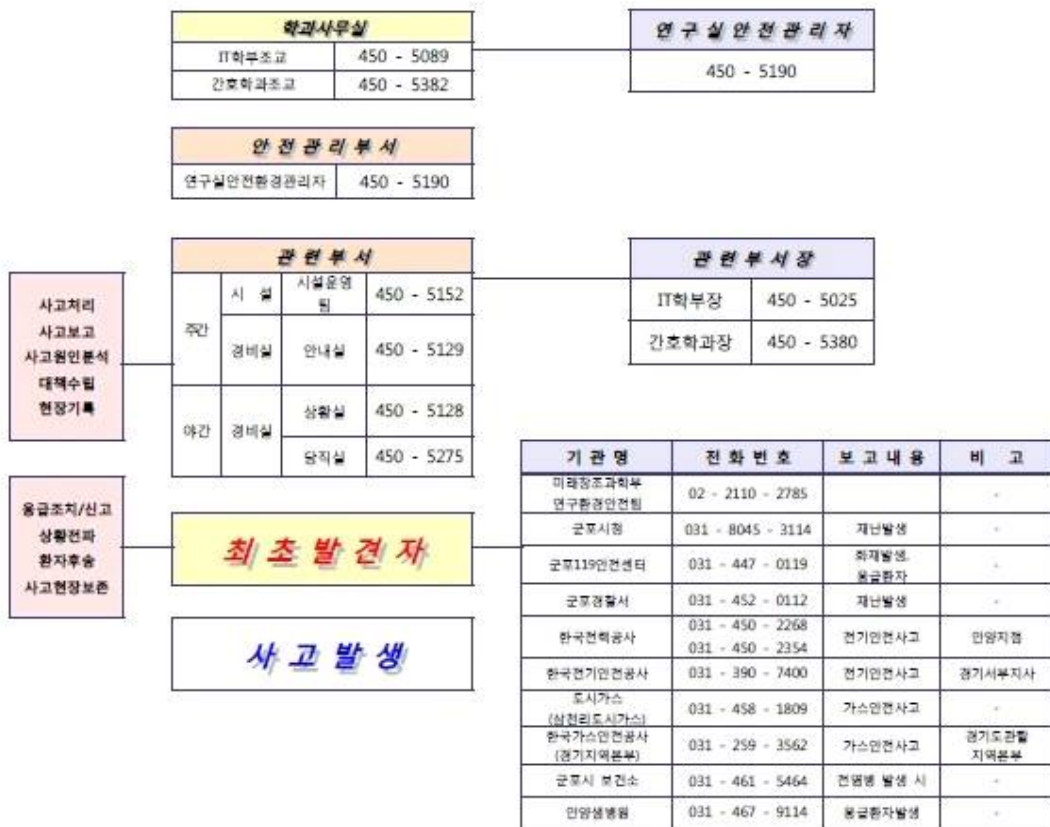
<별표3> 연구실(안전실) 사고대응매뉴얼

사 고 대 응 매 뉴 얼



목 적	각종 사고(화재, 폭발, 누수, 단전, 기계, 화학약품 등)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한다.
1. 사고 발생시 최초발견자는 경비실 근무자에게 즉시 연락을 한다. 또한 초기진압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안전센터(119)에도 신고한다. 2. 경비상황실 근무자 중 1인은 사고현장으로 출동하고, 다른 1인은 아래 담당자에게 비상연락을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 학과장 / 부서장 ▶ 소방안전관리자 : 시설관리팀 [450 - 5190] ▶ 시설관리 당직자 : [450 - 5275, 450 - 5128] 3.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근무자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대처활동을 전개하며, 자체대처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소방안전센터(119)에 신고한다. 4. 나머지 근무자들은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인명구조, 대피지원, 응급구조 활동을 병행한다. 5. 소방서, 경찰, 병원에서 출동한 경우 유관기관의 통제에 따라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한다. 6. 상황종료 후 현장보존 및 피해현황을 파악한다.	

비상연락망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가. 현장을 최초로 발견하거나 도착한 사람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신속한 대응활동을 전개한다. 나. 상황 종료 후 경비근무자는 사고발생 실 및 주변실 책임자에게 이상유무를 확인 받아야 한다.
-------------------	---

<별표4> 연구실(실습실) 사고조사표

연구실 사고조사표

담 당	팀 장	처 장	총 장

발생일시	20 년 월 일	발생학과	
발생장소	연구실 (호실)		
안전관리 담당자		위험등급	A B C 해당없음
사고유발자		최초발견자	

사고발생 경위 :

발생당시 조치내용 :

사고발생 원인 :

사고로 인한 손실 :

사고 조사결과 :

사고방지대책 및 조치계획 :

* 사고현장 및 증거자료에 대한 사진은 별도 첨부

작성일자 : 년 월 일
연구실책임자: (인)

실습 기자재 & 소모품 반출·입 대장

- 반출일자 : 년 월 일 (요일)
- 반출시간 :
- 사 유 :
- 신 청 자 :
- 반입일자 : 년 월 일 (요일)
- 반입시간 :
- 반입 시 관련 물품 이상 유무 : ☐ 무 ☐ 유 ()
 ※ 관련 기자재 이상 시 자세히 기록할 것
- 기자재 목록

No	기자재명	반출			반입		
		수량	신청자 확인	조교 확인	수량	신청자 확인	조교 확인
1							
2							
3							
4							
5							
확인자 (이름/서명)		신청자 :			신청자 :		
		조 교 :			조 교 :		

- 소모품 목록

No	소모품명	반출 수량	비고(사용량 등)	확인자 (이름/서명)	
1				신청자	
2					
3				조교	
4					
5					

<별표6> 교내실습 의료폐기물 관리 지침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교내실습 의료폐기물 관리 지침

※ 교내실습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의료폐기물 폐기 지침에 따라 실습조교가 처리한다.

1. 손상성폐기물

- 기준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 실습 시 사용한 모든 needle

2. 의료폐기물(일반의료폐기물로 처리)

- 기준 :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 실습 시 모형이 아닌 학생이 서로 직접 투여 시 사용한 거즈, 수액set, 수액bag, alcohol솜, syringe 등

3. 생물·화학폐기물

- 기준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는 용기
- 실습 시 사용한 cefaxone Vial

4. 일반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

- 기준 : 수액bag(의료폐기물이 아닌)은 안의 내용물을 모두 비운 후(내용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의약품 등으로 처리) 사업장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배출
- 실습 시 사용한 소모품 중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소모품
- 모형에게 사용한 거즈, 수액set, syringe 등
- 실습 시 사용한 Ampule (Vitamin C)
- 모형에게 사용한 수액Bag(수액을 싱크대에 배출하면 안 됨.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 그냥 사용한 수액Bag 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

5. 일반쓰레기

- 종이류 등

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규정

제정일 : 2013. 3. 1.

개정일 : 2015. 3. 1.

개정일 : 2018. 9. 1.

개정일 : 2019. 3. 1.

개정일 : 2020. 7. 1.

개정일 : 2023. 2. 21.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간호학과 재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도·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간호학과 임상실습 전공교과목에 적용한다.

제3조(실습 교과목의 운영) ① 모든 임상실습 교과목은 학생용과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를 구성, 활용하여 본교 간호학과에서의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감염병 등으로 인해 임상현장에서의 실습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내실습 또는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수하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실습기간 및 이수시간) ① 임상실습 기간은 본교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2023학년도 부터는 임상실습은 22학점 이상으로 하며, 시뮬레이션 실습을 포함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③ 임상실습교과목 학점에 따른 실습시간은 1학점 당 3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상실습시간은 임상실습기관의 규율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⑤ 토요일, 일요일, 국가공휴일은 임상실습이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실습을 시행할 수 있다.

⑥ 방학기간에 임상실습을 시행할 경우에는 실습지도위원회를 통해 교수회의에서 의결한다. 단, 방학 중 임상실습 기간은 매학기 방학 기간의 총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임상실습기관) ① 임상실습기관은 각 전공 실습교과목의 목적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② 임상실습기관은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하여 실습협약서를 체결한다.

1.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특화병원, 교육전담 배치 의료기관)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동(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3. 시설(노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요양시설 등)
4. 지역사회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학교, 산업장, 복지관)
- ③단, 제2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3에 근거한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 ④단, 제2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의해 공시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의미함.
- ⑤단, 제2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특화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2에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서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의 진료 사례가 충분하여 해당 분야를 실습하기에 적합한 의료기관을 뜻함.
- ⑥단, 제2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료기관 선정 사업]에 의해 선정된 의료기관을 뜻함.(2022년부터 시행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지원대상 의료기관 포함.)
- ⑦단, 제2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 병동에 한하며, 해당 임상실습기관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독립된 간호부서
 2. 실습학생 공간 확보(컨퍼런스 룸, 탈의실): 공용 인정
 3. 자격을 갖춘 현장지도자 확보
 4. 현장지도자의 협력실적 학기당 1회 이상
- ⑧위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을 임상실습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습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상실습 기본운영) ①임상실습은 전임교원 또는 임상실습전담강사(이하 '임상실습지도교수'라 한다)가 담당하며, 실습 단위별로 임상실습현장지도자를 배치한다.

- ②각 실습 단위당 학생배치는 8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③매 학기 임상실습 전에는 전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습 영역별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④실습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수한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습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⑤실습일은 주 5일로 하며, 필요시 토요일에 집담회를 시행할 수 있다.
- ⑥임상실습에 대한 차기년도 총 일정표는 매년 2학기 말에 교수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 ⑦임상실습기관과의 실습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매 학기 실시한다.
- ⑧학생의 임의로 실습시간 변경은 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습지도위원회 논의 결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⑨각 전공과목별 실습시간에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1주 1일에 한해서 실습시간에 포함한다. 단, 1주 2일 이상인 경우에는 보충실습을 시행해야 한다.
- ⑩수도권(서울, 경기도) 이외 지역의 임상실습기관에서 실습을 시행하는 학생에게는 원거리 실습지원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지급 시 구체적인 사항은 실습지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7조(임상실습 지도) ①임상실습지도교수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임상경력 3년 이상,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한다.

②임상실습지도교수는 주 1회의 집담회와 주 1회의 순회지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실습일정에 따라 학기별, 교과목별 담당 실습 시수를 반드시 지도해야 한다.

③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임상경력 3년 이상,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하며, 학과장이 위촉한다.

④임상실습현장지도자는 실습시간 동안 해당 실습지의 실습학생을 지도·평가하며, 실습 종료 후에 평가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⑤학생들의 효과적인 실습을 위해 교과목 담당교수는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실습목표 내용, 지도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제8조(출결 사항) ①실습학생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과 행정실, 담당 임상실습지도교수와 임상실습현장지도자에게 알려야하며, 1주일 이내 학과사무실에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간주한다.

②조퇴 2회이거나 지각 2회이면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③결석 1회는 해당 실습교과목 출석 점수에서 2점을 감하며, 지각 또는 조퇴 1회는 1점을 감한다.

④실습기간 중 총 출석일수의 1/4이상을 결석 시에는 실습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단, 담당 임상실습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과장의 허가를 얻어 보충실습을 할 수 있다.

⑤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상실습 출석을 인정하며, 출석인정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사망 (3일)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2.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행사참여 (해당일) : 해당 행사 참여인정서
3. 학교, 학과에서 허가한 사유 (해당일) : 학과 인정서
4.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입원 및 수술(5일) : 진단서, 입원확인서

⑥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교수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

제9조(평가) 임상실습 교과목은 교과목 담당 임상실습지도교수 평가와 임상실습현장지도자 평가, 학생 자가 평가, 출석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평가비율은 각 임상실습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실습학생의 의무) ①실습학생은 임상실습기관의 실습지에서 본교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실습학생은 임상실습기관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실습에 임하여야 한다.

③실습학생은 임상실습 시작 전에 감염성 질환의 항체 유무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예방접종

관련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실습학생이 간호 행위 및 의료기기를 작동할 때는 반드시 임상실습현장지도자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생명과 안위에 해가 되는 행동을 삼간다.
- ⑤실습학생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⑥임상실습 기간 중에 알게 된 대상자의 의료 정보와 해당 임상실습기관의 기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⑦실습학생은 단정한 외모와 예의바른 태도로 임상실습 관련 모든 대인관계에 임하여야 한다.

제11조(실습학생의 제제) ①실습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상실습을 중지시키며, 관련 임상실습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1. 실습 시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실습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습학생으로서의 자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3.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거부 또는 무단으로 실습을 중단한 경우
- ②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실습지도위원회 논의 후, 교수회의를 통해 최종결정한다.

제12조(임상실습 안전관리) ①학과장 또는 실습지도위원장은 매년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②실습학생은 매 학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③실습학생은 제10조제3항에 의거하여 감염성 질환 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학과는 본교 행정처와 연계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 ⑤학과는 임상실습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한다.
- ⑥실습기관 내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실습기관의 지침을 따르며, 사고 당사자인 실습학생은 임상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한다.
- ⑦임상실습지도교원은 관련 안전사고 내용을 즉시 학과장에게 보고하며, 학과장은 필요시 본교에 보고한다.
- ⑧실습학생의 안전을 위해 실습기관과 학생들의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제13조(실습학생의 인권보호) ①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은 임상실습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임상실습과정 및 내용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 보호 및 차별을 금지한다.
- ③학생은 실습 중 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면 즉시 임상실습현장지도자와 임상실습지도교원에게 보고한다.
- ④임상실습지도교원은 학생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간호단위책임자와 조치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 ⑤학과장은 해당 실습기관과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필요시 본교에 보고한다.
- ⑥실습학생의 인권을 위해 실습기관과 학생들의 인권보호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실습 전에 임상실습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12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제정 규정(제13조)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단, 제3조제2항은 2020년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간호학과 교내실습 안전관리지침

제정일 : 2012. 3. 1.

개정일 : 2015. 10. 10.

개정일 : 2017. 4. 11.

개정일 : 2019. 3. 1.

개정일 : 2020. 2. 1.

개정일 : 2023. 2. 21.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교내실습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실습실 범위) 교내실습실은 기본간호학실습실, 시뮬레이션실습실, 자율실습실을 의미한다.

제3조 (안전관리조직체계) ①교내실습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당 간호학과 학과장을 책임자(정)으로 해당 실습실 담당교수를 책임자(부)로 지정하며 교내 실습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관련 활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실습조교는 실습실책임자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교내실습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교내실습실 안전관리) 교내실습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실습은 실습지도교원 또는 실습조교 지도하에 진행한다.
2. 교내실습실 이용규칙을 준수하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3. 교내실습실 사용 전, 후에는 관련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4. 교내실습실 사용 후 실습실 사용일지를 작성한다.
5. 학생들의 자율실습 시에는 실습지도교원 또는 실습조교의 지도하에 실습한다.
6. 실습실 이용자는 감염안전을 위해 교내실습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관리 지침에 따라 분류하며, 실습조교가 총괄 관리한다.
7. 관련 의약품 등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 실습지도교원 및 실습조교가 관리한다.
8. 관련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학기별로 물품의 안전상태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한다.
9.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실습조교, 학생)은 매 학기 법정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5조(교내실습 안전사고 대처방안) 교내실습 안전사고 발생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

1. 학생들이 실습실 이용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교내실습을 제한할 수 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3. 교내 실습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자(부)는 책임자(정)에게 보고하며, 연구실사고조사표를 작성하여 행정처 시설관리팀으로 제출한다.
4. 교내 실습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연구실 이용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교내실습 기자재 관리 및 수리규정) ①교내실습 기자재 관리 및 수리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한다.

1. 교내실습 기자재 관리 대장 및 수리 대장을 구비해야 한다.
2. 실습조교는 기자재 관리 목록별로 수량, 기능 상태를 학기 종료 후 1회 점검하여 기자재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해당 실습실 담당전임교수(부)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으로 해당 실습실 담당전임교수는 학과장(정)에게 보고한다.

②교내실습 기자재 손상 시에는 다음 절차를 준수한다.

1. 실습조교는 해당 기자재 손상 시 해당 내용을 실습실 담당전임교수(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실습실 담당전임교수는 학과장(정)에게 보고한다.
2. 해당 기자재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업체에 문의한다.
3.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수리 견적서를 해당업체에 의뢰한다.
4. 의뢰받은 견적서를 첨부하여 자산수리신청 관련 기안을 진행한다.
5. 해당 기안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업체와 지정한 날짜에 수리를 진행한다.
6. 수리 의뢰한 기자재는 기자재 수리대장에 수리의뢰일, 기구 및 장비명, 고장내역, 등을 기록한다.
7. 해당 기자재의 수리가 완료되면, 기자재의 손상이나 파손이 완전히 해결되었는지 확인 후 실습조교는 1차 검수를 확인하고, 인사총무팀 담당자에게 2차 검수를 의뢰한다.
8. 최종 검수완료 후 지출결의서를 기안하여 지출결의를 진행한다.
9. 수리 완료된 기자재는 기능상태 등을 점검한 후 수령하여 수리대장에 해당 내역을 기재한다.

③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자재는 실습실 담당전임교수(부)의 확인과 학과장(정)의 승인 하에 본교 행정처를 통해 불용처리한다.

1. 보수하여도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제한되어진 기자재
2. 정비수리 시 비용이 현저하게 높아 비경제적인 기자재

④실습기자재의 교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과장(정)의 승인 하에 반출할 수 있으며, 반출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⑤기자재 사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 및 망실된 경우 해당자는 이를 변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 운영지침

개정일 : 2019. 3. 1.

개정일 : 2020. 7. 1.

개정일 : 2023. 3. 14.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간호학과 전공교과목에 적용한다.

제3조(실습 교과목의 운영) ①시뮬레이션 실습은 교내실습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②임상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시나리오화 하여 학생이 사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시뮬레이터 또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간호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교육을 운영한다.

③시뮬레이션 실습지침서는 실습교과목을 구분하여 학생용 실습지침서와 지도자용 실습지침서를 교과목별 학습성과와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본교 간호학과 학습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④시뮬레이션 실습교과목 이수시간은 1학점 당 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⑤시뮬레이션 실습은 실습지도교원 대비 학생 20명 이내로 운영한다.

⑥시뮬레이션 교과목은 전임교원이 학기 당 최소 1학점 이상을 담당한다.

⑦전임교원은 담당 전공 전공교과목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전반을 담당한다.

⑧시뮬레이션 실습지도 교원을 보조하여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실습조교 또는 기술자 등이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⑨교육 목적으로 동의서를 취득한 후 실습 관련 녹화 및 보관하고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⑩시뮬레이션 실습실 및 실습기자재는 간호학과 운영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⑪감염병(COVID-19 등)으로 인해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이 불가한 경우에는 온라인 실습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 규정을 준수하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⑫불가피한 상황으로 해당 학기에 시뮬레이션 실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개강이전, 종강 이후에 보강할 수 있으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4조(실습지도교원) ①실습지도교원은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모듈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한다.

②실습지도교원은 모듈 운영 전체 시간과 시간별 세부 운영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진

행한다.

- ③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을 운영할 경우, 실습지도교원은 표준화 환자가 해당 교과목의 실습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표준화 환자에게 신청서를 제공하고 면접을 통해 표준화 환자 활용에 대해 결정한 후, 인건비, 비밀유지, 신체사정 범위, 영상과 사진 촬영, 녹화, 보관,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표준화 환자에게 실습안전과 실습학생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설명한다.
- ④실습지도교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와 제 17조에 근거하여 실습 사진과 영상 촬영, 녹화, 보관, 활용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교내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출결 및 평가, 실습학생의 의무 및 제제, 교내실습 안전관리, 실습학생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지도한다.

제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본교 학칙 및 세칙을 준용하며, 교수회의를 통해 논의 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단, 제3조제6항, 제7항은 2020년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일 : 2017. 3. 1.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제정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관리
3. 교육과정에 대한 질관리 체계운영
4.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수준, 평가체계 개발 및 운영
5. 지속적인 학과운영개선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학과장이 당연직으로 역임한다.
- ③위원은 본 학과 전임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④필요한 경우 위촉된 외부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⑤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②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실습지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일 : 2017. 3. 1.

개정일 : 2023. 2. 21.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간호학과의 실습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실습교육과정 제정, 개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2. 임상실습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3. 실습실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핵심간호술 교육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은 본 학과 전임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필요한 경우 위촉된 외부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④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위원장은 학과장이 임명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②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은 학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과발전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일 : 2017. 3. 1.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간호학과의 학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학과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과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학과 발전기금 조성 등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학과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본 학과 전임교수 전원, 졸업생 1인 및 외부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촉된 외부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은 학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지도 및 취업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일 : 2017. 3. 1.

개정일 : 2023. 2. 21.

개정일 : 2025. 2.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세대학교 간호학과의 학생지도 및 취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
2. 비교과과정 및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 지도
3. 재학생 취업 및 졸업생 취업 유지를 위한 지도
4.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 및 분석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본 학과 전임교수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과장이 위촉하는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필요한 경우 위촉된 외부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위촉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및 직무) ①위원장은 학과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소집 등)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과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은 학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①위원회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본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제정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지침은 202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